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38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최은석 · 강승규 · 김용태

김상훈 • 박준태 • 서명옥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서관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 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제1조(「도서관법」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	
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	
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
분보장) ① (생 략)	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u> </u>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3. (생략)	3. (현행과 같음)